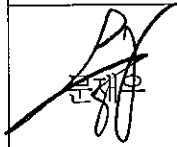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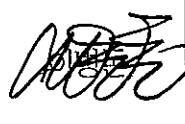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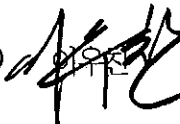


회 의 록

회 의 명	제41차 대학평의위원회
일 시	2018. 8. 23.(목), 13:00~14:00
장 소	한세대학교 본관 8층 대회의실
참 석 자	유동희, 양현호, 김정일, 문재우, 김신용, 박종도, 이병돈, 이우찬
불 참 자	조재혁, 오관영, 윤영춘
안 건	학칙 개정안 심의
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	<p>□ 유동희 의장의 개회선언과 김정일 평의원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.</p> <p>[안건 1] 학칙 개정안 심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유동희 의장은 학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신현기 기획처장에게 요청함 ○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설명함. ○ 제12조(편입학) 연계전공도 가능토록 용어 변경 :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→ 다전공 ○ 제31조의2(교직과정) : 교직과정 폐지로 조를 삭제 ○ 제46조(졸업 및 학위), 제78조(학칙 개정 절차), 제79조(학칙개정심의위원회) :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을 교무입학처에서 교무혁신처로 변경 ○ 제64조(부속기관) 학술정보원 명시 ○ 제75조(목적) 본교 교육목적 '기독교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전인교육'과의 일치 ○ 제76조(사회봉사) 사회봉사 졸업인증제 규정 명시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☞ 다음 장에 계속</p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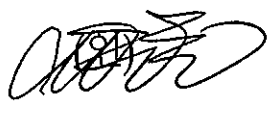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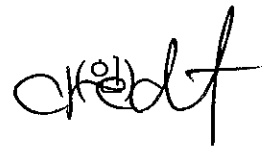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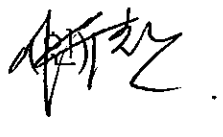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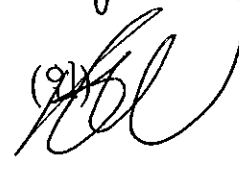
	평의원	평의원	평의원
간서명란	 문재우	 이동희	 이우찬

<p>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</p>	<p>앞 장에서 이어짐</p> <p>[기타의견]</p> <p>○ 본 회의록에 대한 간서명인을 문재우, 이병돈, 이우찬 위원으로 정함.</p> <p>□ 의장의 폐회선언과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침</p> <p>붙 임 : 1. 위원 서명지 1부. 2. 회의자료 1부. 끝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(앞장에서 이어짐)

2018. 8. 23.

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.

의 장	유 동희	
평 의 원	박 종도	
평 의 원	양 재호	
평 의 원	이 병준	
평 의 원	김 신응	
평 의 원	이 우찬	
평 의 원	문 재우	
평 의 원	김정호	
평 의 원		(인)

끝.

제41차

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

- 일 시 : 2018. 8. 23.(목), 13:00
- 장 소 : 본관 8층 대회의실
- 안 건 : 학칙 개정(안) 심의



학칙 개정(안)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<p>제12조(편입학) ①당해 학년 및 학과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하며 전적 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는 편입학할 수 없다.</p> <p>③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정원 외로,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학과정원의 4% 이내로 하며 3학년 입학정원의 2%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④편입학생은 필요에 따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할 수 있다.</p> <p>⑤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편입학) ① (좌 동)</p> <p>② (좌 동)</p> <p>③ (좌 동)</p> <p>④편입학생은 필요에 따라 다전공을 할 수 있다.</p> <p>⑤ (좌 동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계전공도 가능토록 용어 변경
<p>제31조의2(교직과정) ①(삭 제)</p> <p><u>②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수에 산입한다.</u></p> <p><u>③교직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제31조의2(교직과정) (삭 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직과정 폐지로 조 삭제
<p>제46조(졸업 및 학위) ①졸업사정과 학위 수여·취소를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학과장으로 한다.</p> <p>②졸업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.</p>	<p>제46조(졸업 및 학위) ①----- -----교무혁신처장----- -----.</p> <p>② (좌 동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제 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

현행	개정(안)	사유
<p>③복수전공, 연계전공 이수자에 대하여는 전공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.</p> <p>④부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장에 부전공을 표시한다.</p> <p>⑤타 대학교와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,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	<p>③ (좌 동)</p> <p>④ (좌 동)</p> <p>⑤ (좌 동)</p>	
<p>제64조(부속기관) (삭제 2006. 8. 25)</p>	<p>제64조(부속기관) <u>본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기관을 두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<u>1. 학술정보원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도서관진흥법에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
<p>제75조(목적) 본 대학교 교육이념을 기초한 의와 진리는 현실 속에 검증되고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하기에, 본 대학교의 사회봉사활동은 <u>그리스도 정신</u>을 근간으로 한세인의 전인교육을 선도하며 <u>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</u>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75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기독교 신앙을</u>-----</p> <p>-----<u>지역사회에 공헌함을</u>-----</p> <p>-----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교 교육목적 '기독교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전인교육'과의 일치
<p>제76조(사회봉사) ①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한다.</p> <p>②(삭제)</p>	<p>제76조(사회봉사) ① (좌 동)</p> <p>② (좌 동)</p>	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<p>〈신 설〉</p> <p>③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p>	<p><u>③사회봉사졸업인증 자격기준은 사회봉사졸업인증규정에 따른다.</u></p> <p>④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봉사 졸업인증제 규정을 반영함 • 기존 ③항을 ④항으로 이동
<p>제78조(학칙 개정 절차) ①본 대학교의 학칙 개정은 개정 사유가 발생한 소관 부서에서 개정안을 <u>교무입학처</u>에 제출하여야 발의되며 제출된 개정안은 <u>교무입학처</u>에서 취합하여 교내게시판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고한다.</p> <p>②발의된 학칙 개정안은 학칙개정심의위원회, 교무위원회 심의와 대학평의원회 심의후 확정된다.</p> <p>③삭제</p> <p>④삭제</p>	<p>제78조(학칙 개정 절차) ①----- -----<u>교무혁신처</u>----- -----<u>교무혁신처</u>----- -----.</p> <p>② (좌 동)</p> <p>③ (좌 동)</p> <p>④ (좌 동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제 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
<p>제79조(학칙개정심의위원회) ①본 대학교에 학칙 개정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학칙개정심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위원회는 <u>교무입학처장</u>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는 각 학과장이 되며, 임명직으로는 실·처장의 2인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④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79조(학칙개정심의위원회) ① (좌 동)</p> <p>②위원회는 <u>교무혁신처장</u>----- -----.</p> <p>③ (좌 동)</p> <p>④ (좌 동)</p> <p>⑤ (좌 동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제 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
	부 칙	

현행	개정(안)	사유
	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	